식품외식종합자금(융자)

세부사업명	식품외식종합자금(융자)					세목	융자금		
내역사업명	식품가공원료매입, 농식품시설현대화, 외식업체육성,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, 식품원료계열화					예산 (백만원	15	157,000	
사업목적	○ 농식품 제조·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	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확대를 위한 가공원료매입 및 부대비용 지원 ○ HACCP,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·가공업체 시설현대화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,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, 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시설,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.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*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"조합" 및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								
지원한도	○ 식품가공원료매입 : 50억원 ○ 농식품시설현대화 : 50억원 / (소규모창업) 12억원(시설 10억원, 운영 2억원) ○ 외식업체육성지원 : 시설자금 1억원, 운영자금 5억원 ○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 : 시설자금 20억원, 운영자금 20억원 ○ 식품원료계열화 : 10억원	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	- 지방비	-	융자		80	자부담	20	
연도별 재정투입 현황	구 분 합 계 융 자 자부담	2017년 150,350 120,280 30,070	2018년 169,00 135,28 33,82	0	145,000		(단위: 백만원) 2020년 이후 196,250 157,000 39,250		
담당기관		담당	담당과		담당자		연락처		
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		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저채그유법		당 이· 만 강· 당 이 만 류· 당 한·	태원 재식 성훈	044-20 044-20 044-20 044-20 061-93	1-2138 1-2151 1-2157	
	ποοΝ	07087	0700T			성진	061-93	-	
신청시기	정기(전년12월~4월), 수시(잔여예산 발생시)			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				
관련자료	식품외식종합자금(융자) 시행지침서 참조								

I /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시설,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※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"조합" 및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
- 시설,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중 지원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식품가공원료매입
 - 국산 농산물 제조·가공업체(전통주류 포함) 및 전처리업체
- 농식품시설현대화
 - 농식품 제조·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
 - ※ 농식품 제조・가공업체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
 - ※ 식품안전인증: HACCP, GMP, ISO22000
 - ※ 농식품인증 : 전통식품품질인증, 술품질인증, 유기가공식품인증
 -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·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%이상인 업체
 - 대표자가 농업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·가 공업체의 경우, 지원자격 및 요건은 별도 세부지원계획에 따름
 - ※ 소규모 창업기업 :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이면서 직원수 10인 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(건축 예정 면적 포함)
- 외식업체육성
- 외식업체(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,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, 단체급식사업자)
-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
 - 농림축산식품부·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(참가경 영체 포함)으로 농수축산식품(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) 취급 업체
- 식품워료계열화
-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과 계약재배 하는 식품제조·가공업체

○ 선정(배정)우선순위

-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, 사회적기업인증, 벤처인증기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또는 가점 부여
- 농식품시설현대화,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자금은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(또는 참여 약정)한 경우 가점 부여

○ 지원 제외기준

- (식품가공원료매입) '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'(농식품원료구매자금)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
- (농식품시설현대화) 사업신청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「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(거짓표시)으로 적발된 자
- (외식업체육성)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, 식재료만 공급하는 업체 또는 별도의 장소에 특정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지속 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·공급하는 업체, 주점업, 숙박업 등 타업종과 외식업을 겸하는 업체(전통주점은 지원 포함)
- (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)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

3. 지원대상

- 식품가공원료매입 :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
- 농식품시설현대화 : 건물 신축·증축·개축. 기계기구(설비) 도입. 가공공장 매입
- 외식업체육성 : 외식업체 개설·개보수와 관련된 임차 보증금·매장 신축· 인테리어 공사비·주방시설·설비비·비품 집기 구입, 국산 식재료 구매
-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: 시설 및 원료구입, 저장, 가공, 운송 등 부대비
- 식품원료계열화 :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을 농업인과 계약재배하여 매입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운영자금 : 국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구입, 저장·가공 등 기업경영비용

○ 시설자금 : 저장·가공·부대시설의 건축·확보·증설·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(단, 부지매입비 제외)
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- 융자재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
- 융자금리 :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
 - (고정금리) 농업경영체 2.5%(시설자금 2.0%), 일반업체 3.0%

식품원료계열화 : 농업경영체 1.5%. 일반업체 2.0%

- ※ 자금별 일정 요건 충족시 금리 우대(고정금리시 1% 금리 인하)
- (변동금리) 농협은행 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금리변경은 최초 대출 후 6개월 주기)
-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(고정 또는 변동)은 해당 대출기간중 변경 불가
- 융자기간
 - 식품가공원료매입 : 운영자금 1년(전통주류는 2년)
 - 농식품시설현대화 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운영자금(2년)
 - 외식업체육성 :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, 운영자금(1년)
 -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운영자금(2년)
 - 식품원료계열화 : 운영자금 1년
- 지원기준 : 총 사업소요액의 80%이내 융자. 자부담 20% 이상
- 사업의무
 - 운영자금 :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%이상
 - 시설자금 : 시설 기성금액이 지원액의 125%이상, 인증취득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식품가공원료매입: 50억원
- 농식품시설현대화 : 50억원 / 농업인대표 소규모창업기업 12억원(운영 2, 시설 10)
- 외식업체육성: 12억원(운영 10억원, 시설 2억원)
-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: 40억원(운영 20억원, 시설 20억원)

○ 식품원료계열화 : 10억원

Ⅲ.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-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, 농식품부(담당과)에 보고하고, 지원계획 공고·홍보 추진
 - *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(공고 포함) 등을 실시할 수 있음
- 식품외식종합자금(융자) 지원 신청서 접수

2. 사업자 선정단계

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-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
 - *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(거짓표시)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농산물)과 수산물품질관리원(수산물)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시스템에서 확인
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
-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사업주관 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하반기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-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자금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, 포기 자금, 추가자금,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수시 배정 가능
-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,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
- 사후관리기간 : 대출일로부터 융자금 상환 시 까지
 -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, 다만, 합병·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-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및 사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
 -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

《제재 및 처벌내용》

○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규정,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

Ⅳ. 평가 및 환류

《사업평가》

-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
-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 할 수 있음

《환 류》

- 사업평가결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개선
-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또는 배정액 차등지원 가능
 - 차등지원 기준은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

2020년도 식품·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

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								
등록번호 단지 입주여부 사업유형 신 (해당분야 □ 농식품 제조·가공업 □ 외식업체 □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								
신 │ (해당분야 │ □ 농식품 제조:가공업 □ 외식업체 □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								
업 사업체구분 □ 농어업인·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□ 조합 등 일반업체)							
체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(사무직 ,생산직	,							
현 본사 본사								
황 전화: 팩스: 홈페이지:								
소 재 지								
공장 규모 : 부지 평, 건물 평								
전화: 팩스:								
□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□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								
신 청 분 야 □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□ 외식업체육성지원	□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□ 외식업체육성지원							
신 식품원료계열화 청	□ 식품원료계열화							
생 신청금액 시설자금 백만원(총사업비: 백민	원)							
용 (사업별 대출한도액 운영자금 백만원(총사업비 : 백민	원)							
총사업비의 80% 이내) 합 계 백만원(총사업비 : 백민	원)							
인증취득 및 지정현황								
2020년도 식품·외식종합자금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,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								
신청인 업체명 : 2020년 월 일 대표자 : (인) <첨부서류> 작성자 : (직위) (성명) (인)								
- 1. 사업계획서 1부								
2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								
3.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(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)								
4.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								
5. 농업인확인서(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신청 소규모식품제조업체 중 대표자가 농업인인 경우) 6.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(전통주 제조업체)								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								

- ※ 신청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 - 선정(배정)우선순위